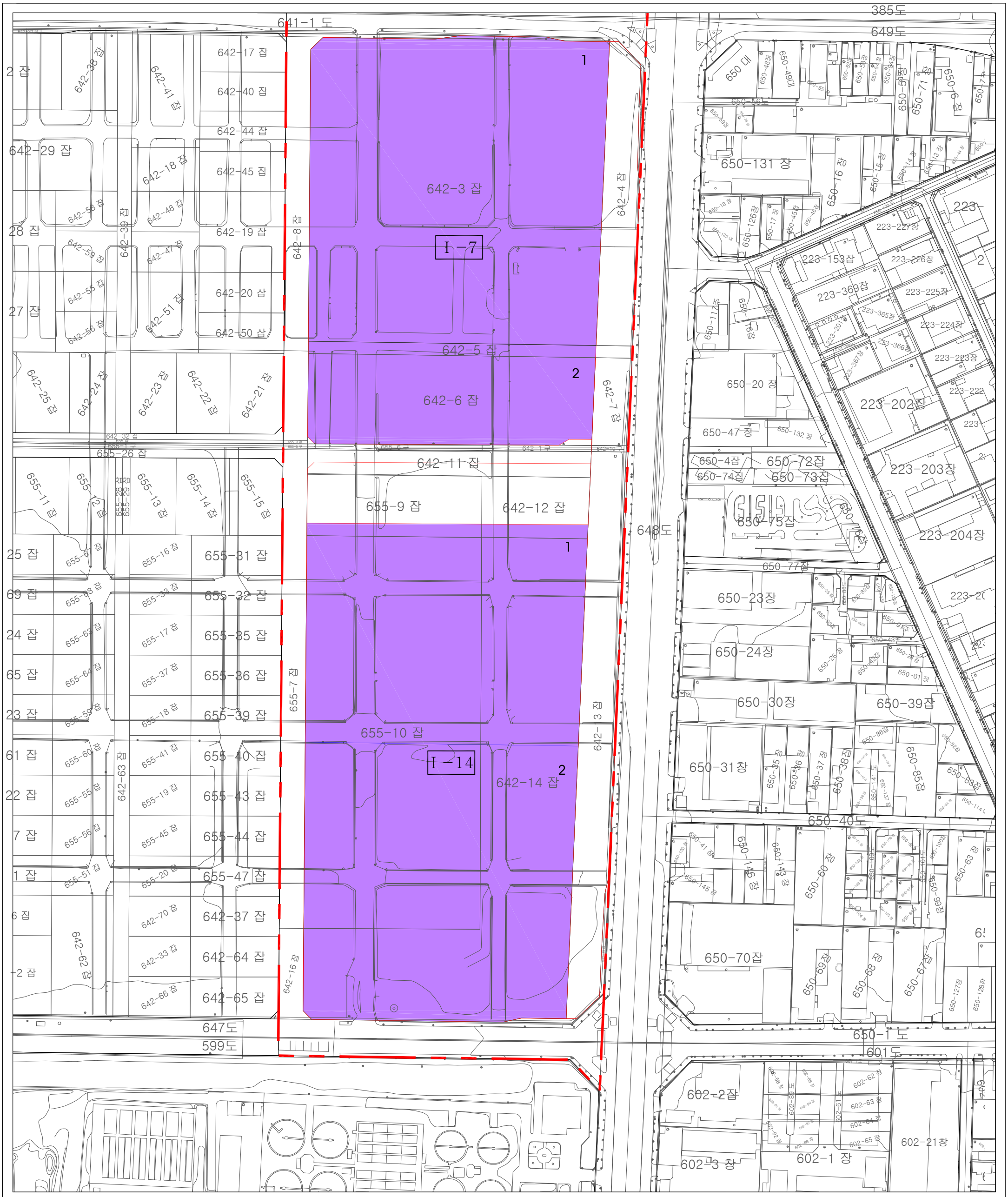

본 고시도는 변경부분에 한하여 유효 함.

도시관리계획(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도

-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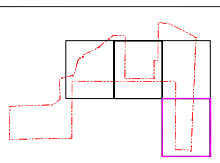

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
가 구 선
획 지 선
필 지 선
I 공 업 용 지(I)

※ 가구번호 Ⅱ-1, Ⅱ-2, Ⅱ-3, Ⅱ-4의 필지(기존 획지선)선은 변경할 수 없으며, 필지분할은 필지선 안에서 필지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

구 분	입 안 권 자		결 정 권 자	
	1차 확인자	2차 확인자	1차 확인자	2차 확인자
소 속	서 구 청 도시개발과	서 구 청 도시개발과	도시계획과	도시계획과
직 위	-	도시계획담당	-	지구단위계획담당
직 명	지방시설서기보	지방시설주사	지방시설주사	지방시설사무관
성 명	김 민 성	김 지 연	이 승 희	서 강 원
확인 (인)				

지 정 권 자	인천광역시장
지 정 일 자	2016년 6월 7일
고 시 년 도	2016년
고 시 번 호	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6-123호
작 성 자	인천광역시장
작 성 일 자	2016년 6월 7일
저작권소유 및 발 행 자	인천광역시장